

「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광성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4. 12.
- 회부일자 : 2024. 4. 16.
- 상정일자 : 2024. 4. 16.

2. 제안이유

-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령 운전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장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띄어쓰기 정정 및 자구 수정(안 제9조)
- 교통비 지원대상 세분화 및 확대 지원(안 제9조)
 - (현행) 30만원 ⇨ (개정) 차량미소유자: 30만원 / 차량소유자: 40만원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('12~'21년)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3.3%에서 24.3%까지 11.0%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,

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및 인구 증가 비율



※ 출처 : 통계청,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

이는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('12년 11.7% ⇒ '21년 17.1%, 5.4%p ↑) 추세와 비교해도 약 2배 높은 수치로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.

-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에서 ‘지자체는 주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장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9조(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)에서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문맥상 자연스럽게 조문을 수정함.

※ **현행** 30만원 → **개선** 차량미소유자: 30만원 / 차량소유자: 40만원

5. 종합검토의견

-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, 상위 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 타 지자체 사업현황

○ 도내 현황

(2024년 사업계획 기준, 단위: 세, 만원, 명)

지자체	연령	금액	형태	지원인원	자체사업 추진 여부
춘천시	65	10	지역상품권	674	추진
원주시	65	10	교통카드	380	-
강릉시	65	20	지역상품권	600	추진
동해시	65	10	현금	603	-
태백시	65	10	지역상품권	45	-
속초시	65	10	현금	121	-
삼척시	65	15~30	현금	121	추진, 차등지급
홍천군	70	10~20	현금	127	추진, 차등지급
횡성군	65	10	현금	91	-
영월군	65	10	현금	61	-
평창군	70	30	현금	73	추진
정선군	65	10	현금	61	-
철원군	65	10~30	지역상품권	79	추진, 차등지급
화천군	65	20	지역상품권	24	추진
양구군	65	30	현금, 택시쿠폰	50	추진
인제군	65	20	지역상품권	61	-
고성군	65	10	현금	42	-
양양군	65	10	현금	48	-

○ 전국 지자체 지원금액 현황

- 30만원: 16개 지자체
- 50만원: 2개 지자체(구례군, 진도군)
- 그 외 지자체는 10만원 ~ 20만원 지원

○ 차량소유자와 미소유자를 구분한 지급조건을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

- 전국 4개 지자체: 영동, 나주, 구례, 강진

붙임 2 평창군 사업 추진실적
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금 지원사업 추진실적

□ 개 요

- 사 업 명 :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
- 추진근거
 -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
 -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제9조
- 사업대상
 -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
 - 2021년 6월~12월 한시적으로 만65세 이상으로 적용
- 지원내용
 -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, 인센티브 지급(100천원)
 -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(2021. 11. 5.)
2022. 1. 1.부터 인센티브 300천원 지급

□ 추진현황

- 2020년 추진실적
 - 예산액 : 8,000천원(도 2,400, 군 5,600)
 - 집행액 : 8,000천원(도 2,400, 군 5,600)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지급인원	지원금액	비고
합 계	80	8,000	
1월	14	1,400	
2월	18	1,800	
3월	8	800	
4월	4	400	
5월	7	700	
6월	3	300	
7월	3	300	
8월	7	700	
9월	2	200	
10월	8	800	
11월	5	500	
12월	1	100	

○ 2021년 추진실적

- 예산액 : 44,800천원(국 11,040, 도 2,400, 군 5,600)
- 집행액 : 7,500천원(도 2,400, 군 5,600)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지급인원	지원금액	비고
합 계	75	7,500	
1월	12	1,200	
2월	2	200	
3월	2	200	
4월	7	700	
5월	12	1,200	
6월	7	700	
7월	2	200	
8월	1	100	
9월	2	200	
10월	10	1,000	
11월	11	1,100	
12월	7	700	

○ 2022년 추진실적

- 예산액 : 36,300천원(도 2,430, 군 33,870)
- 집행액 : 36,300천원(도 2,430, 군 33,870)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지급인원	지원금액	비고
합 계	121	36,300	
1월	23	6,900	
2월	16	4,800	
3월	15	4,500	
4월	13	3,900	
5월	10	3,000	
6월	3	900	
7월	2	600	
8월	2	600	
9월	13	3,900	
10월	1	300	
11월	0	0	
12월	23	6,900	

○ 2023년 추진실적

- 예산액 : 36,000천원(국 3,000 도 2,100, 군 30,900)
- 집행액 : 33,600천원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지급인원	지원금액	비고
합 계	120	36,000	
1월	29	8,700	
2월	12	3,600	
3월	16	4,800	
4월	14	4,200	
5월	10	3,000	
6월	5	1,500	
7월	4	1,200	
8월	7	2,100	
9월	12	3,600	
10월	3	900	
11월	8	2,400	

○ 2024년 추진실적

- 예산액 : 7,300천원(국 2,190 도 1,533, 군 3,577)
- 집행액 : 7,200천원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지급인원	지원금액	비고
합 계	24	7,200	
1월	23	6,900	
2월	1	300	
3월	-	-	